

의안번호	2213141
의 퇴 인	이연희의원
회 답 일	2025. 11. 17.
추 계 번호	25B5249

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(일부추계)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8,000만원(연평균 1,600만원)으로 추계됨
-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
[표 1]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2027	2028	2029	2030	2031	합 계	연평균
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(안 제5조)	80	-	-	-	-	80	16

주: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Ⅱ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5조(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)	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(제1항)	의무규정
2	안 제7조(통계작성 및 관리)	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·관리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3	안 제8조(기술개발 촉진)	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1. 지능형교통체계 기술 연구개발 사업 2. 지능형교통체계 기술에 대한 평가 사업 3. 지능형교통체계 기술의 협력, 이전 등의 실용화 사업	재량규정
4	안 제9조(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표준화)	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기술, 시설, 서비스 등의 이용·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여야 함(제1항) 1. 지능형교통체계 대국민 서비스에 관한 표준화 2. 지능형교통체계 구성 장비에 관한 표준화 3. 지능형교통체계 서비스 제공자 간 호환성 확보에 관한 표준화 4. 지능형교통체계 품질관리에 관한 표준화 5. 그밖에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	의무규정
		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」 제82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5	안 제10조(지능형교통체계 시범사업)	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능형교통체계사업시행자는 지능형교통체계 기술의 이용·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·기간·규모 등을 한정하여 지능형교통체계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(제1항)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능형교통체계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6	안 제11조(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)	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(제1항) 1. 지능형교통체계기술의 국제공동연구 협력 및 해외 현지화 2.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전시회·학술회의의 개최 및 참가 3. 「국제개발협력기본법」과 「대외경제협력기금법」에 따른 해외 지능형교통체계사업 무상 협력 또는 유상 협력 지원 4. 그 밖에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사업자가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교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7	안 제12조(창업 및 성장 지원)	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사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그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·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1. 창업자금의 지원 및 융자 2. 창업에 필요한 법률, 세무, 회계 및 그 밖의 상담 3. 창업에 필요한 교육 등 지원 4. 지능형교통체계산업 연구·개발 성과의 제공 5. 지능형교통체계 기술개발에 필요한 장비 및 설비 지원 6. 지능형교통체계 진흥시설에 대한 우선 입주 기회 제공 7. 유상 지능형교통체계 정보의 무상제공 8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	재량규정
8	안 제13조(지능형교통체계 우수 인증)	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의 수준 향상 및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 사업자, 관리청 또는 서비스 등에 대하여 우수 인증을 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9	안 제14조(지능형교통체계산업 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)	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, 장비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을 지능형교통체계산업 지원기관(이하 “지원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할 수 있음(제1항)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10	안 제15조(지능형교통체계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등 및 지원)	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능형교통체계산업 진흥시설(이하 “진흥시설”이라 한다)을 지정하고, 예산 및 설비제공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1	안 제17조(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)	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흥시설을 조성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, 그리고 지능형교통체계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단체 등에게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음	재량규정
12	안 제18조(지능형교통체계전문인력의 양성)	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음(제1항) 1. 전문인력의 수요실태 파악 및 중·장기 수급 전망 수립 2. 지능형교통체계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 3. 전문인력 양성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. 지능형교통체계 전문인력의 경력관리 지원 5. 지능형교통체계 직무표준 및 자격제도 운영 6.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,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13	안 제19조(국·공유재산의 임대 등)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교통체계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, 창업자의 성장·발전을 위하여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에도 불구하고 지능형교통체계사업을 창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음(제1항)	재량규정
14	안 제20조(표창)	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기술 및 서비스의 개발·보급을 촉진하고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·단체 또는 기업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음	재량규정
15	안 제21조(세제지원 등)	정부는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(제1항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,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능형교통체계사업자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(제2항)	재량규정
16	안 제22조(권한의 위임·위탁)	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의 지원기관이나 해당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(제1항)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제3항)	재량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5조(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)	○	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추계
2	안 제7조(통계작성 및 관리)	—	- 미대상 - 제정안은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이원회의원 대표발의, 의안번호 제1314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, 해당 개정안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⁾ -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유사사례를 참고할 경우 사업 현황 파악 및 통계 작성을 단일한 연구용역을 통해 수행할 수 있으므로, 동 제정안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과 연계법률안인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3140호)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실태조사를 단일한 연구용역을 통해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에 따른 추가 재정소요에 대한 추계는 해당 연계법률안에서 실시하므로 동 제정안에서는 중복하여 비용추계를 실시하지 않음
3	안 제8조(기술개발 촉진)	×	-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현 시점에서는 사업의 내용 및 규모,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

- 1) 「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」 제76조의2(지능형교통체계 실태조사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·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능형교통체계에 관한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1.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·운영 및 서비스 실태에 관한 사항
 2. 지능형교통체계 서비스 만족도에 관한 사항
 3.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연구·개발 및 표준화 동향에 관한 사항
 4. 지능형교통체계 산업 및 해외진출 현황에 관한 사항
 5. 그 밖에 지능형교통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								
4	안 제9조(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표준화)	×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–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표준화를 추진하고,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전담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현 시점에서는 표준화의 내용 및 방식, 전담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– 참고로, 국토교통부는 지능형교통체계 표준화 관련 다음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(단위: 백만원)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사업명</th><th>사업내용</th><th>'25</th><th>'26(안)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첨단도로교통체계(ITS 표준성능평가)</td><td> - ITS 표준의 수요조사, 동향분석예측 - ITS 표준에 관한 정보·자료의 수집 분석 및 보급 지도 - ITS 표준의 개발 및 홍보 - ITS 표준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- ITS 표준의 적용 확산 검증, 보급 확대 및 활용 지원 - ITS 표준에 관한 산업·학계 또는 연구기관과의 협력 증진 등 </td><td>600</td><td>600</td></tr> </tbody> </table> 자료: 국토교통부	사업명	사업내용	'25	'26(안)	첨단도로교통체계(ITS 표준성능평가)	- ITS 표준의 수요조사, 동향분석예측 - ITS 표준에 관한 정보·자료의 수집 분석 및 보급 지도 - ITS 표준의 개발 및 홍보 - ITS 표준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- ITS 표준의 적용 확산 검증, 보급 확대 및 활용 지원 - ITS 표준에 관한 산업·학계 또는 연구기관과의 협력 증진 등	600	600
사업명	사업내용	'25	'26(안)								
첨단도로교통체계(ITS 표준성능평가)	- ITS 표준의 수요조사, 동향분석예측 - ITS 표준에 관한 정보·자료의 수집 분석 및 보급 지도 - ITS 표준의 개발 및 홍보 - ITS 표준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- ITS 표준의 적용 확산 검증, 보급 확대 및 활용 지원 - ITS 표준에 관한 산업·학계 또는 연구기관과의 협력 증진 등	600	600								
5	안 제10조(지능형교통체계 시범사업)	×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–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능형교통체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,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·기술적 지원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현 시점에서는 시범사업의 내용 및 실시 지역·기간·규모, 시범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							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								
6	안 제11조(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)	×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, 해외시장 진출 및 국제교류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능형교통체계 사업자에 대한 비용 지원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현 시점에서는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지원사업의 내용 및 방식, 지능형교통체계사업자에 대한 비용 지원의 기준 및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- 참고로, 국토교통부는 지능형교통체계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음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(단위: 백만원)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사업명</th><th>사업내용</th><th>'25</th><th>'26(안)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첨단도로 교통체계 (ITS 국제협력)</td><td>-ITS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교류, 홍보 및 조사, 기술 및 정책자문 등 지원</td><td>950</td><td>950</td></tr> </tbody> </table> 자료: 국토교통부	사업명	사업내용	'25	'26(안)	첨단도로 교통체계 (ITS 국제협력)	-ITS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교류, 홍보 및 조사, 기술 및 정책자문 등 지원	950	950
사업명	사업내용	'25	'26(안)								
첨단도로 교통체계 (ITS 국제협력)	-ITS 관련 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교류, 홍보 및 조사, 기술 및 정책자문 등 지원	950	950								
7	안 제12조(창업 및 성장 지원)	×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능형교통체계사업자의 창업을 촉진하고 그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·발전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현 시점에서는 창업 및 성장 지원의 내용 및 규모,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								
8	안 제13조(지능형교통체계 우수 인증)	×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능형교통체계 사업자, 관리청 또는 서비스 등에 대하여 우수 인증을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현 시점에서는 인증 심사·평가의 기준 및 방식, 인증제도 운영을 위한 필요 인력 및 시스템의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								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9	안 제14조(지능형교통체계 산업 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)	×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능형교통체계산업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지원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현 시점에서는 지원기관의 수, 지원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
10	안 제15조(지능형교통체계 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등 지원) 안 제17조(진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)	×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능형교통체계산업 진흥시설을 지정하여 예산 및 설비제공 등의 지원을 하고, 지방자치단체가 진흥시설을 조성하려는 법인 또는 단체, 지능형교통체계사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단체 등에 출연·출자를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현 시점에서는 진흥시설의 지정 수, 진흥시설에 대한 국가의 지원 내용 및 규모, 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
11	안 제18조(지능형교통체계전문인력의 양성)	×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능형교통체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고,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예산을 지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현 시점에서는 전문인력 양성 시책의 내용 및 규모,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수 및 예산 지원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
12	안 제19조(국·공유재산의 임대 등)	×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제정안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능형교통체계사업을 창업하려는 자 등에게 국·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임대하거나 매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현 시점에서는 지능형교통체계사업을 창업하려는 자의 수, 임대·매각하는 국·공유재산의 대상 및 임대·매각의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 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3	안 제20조(표창)	×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제정안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능형교통체계 기술 및 서비스의 개발·보급을 촉진하고 지능형교통체계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·단체 또는 기업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현 시점에서는 지급되는 표창의 수 및 내용, 수여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
14	안 제21조(세계지원 등)	×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제정안에 따라 정부가 지능형교통체계사업자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고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능형교통체계사업자에 대하여 조세감면 등의 조치를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, 현 시점에서는 지능형교통체계사업자의 수, 지능형교통체계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조세감면의 기준·내용·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소요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
15	안 제22조(권한의 위임·위탁)	×	•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- 제정안은 제정안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업무 위탁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, 현 시점에서는 수탁기관에 위탁할 업무의 범위 및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수탁기관의 인력 및 경비 등의 규모를 알 수 없음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국회 심의기간 및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(안 제5조)
 - 제정안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유사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사례를 참조하여 추계함
 - － 연구용역은 2027년에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며, 제정안에 따라 5년마다 실시
 - 유사사례로, 국토교통부장관은 「공간정보산업 진흥법」²⁾에 따라 5년마다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, 2025년 ‘제4차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’ 예산은 8,000만원임
 - 유사사례를 참고하면,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8,000만원(연평균 1,600만원)으로 추계됨

[표 2] 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7~2031년
(단위: 백만원)

	2027	2028	2029	2030	2031	합계	연평균
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	80	—	—	—	—	80	16

주: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, 실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2) 제4조(공간정보산업진흥 계획의 수립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산업 진흥을 위하여 「국가공간정보기본법」 제6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간정보산업진흥 기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 (각 호 생략)

IV. 부대의견

- 본 추계는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결과로, 제정안의 전체적인 추가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
-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소요를 추계한 것으로, 실제 연구용역 실시 방법 및 금액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증감할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최동완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최동완	02-6788-3746	dongwaniii@nabo.go.kr

[참고자료] 지능형교통체계(ITS: Intelligent Transport Systems) 개요

(국토교통부 제출자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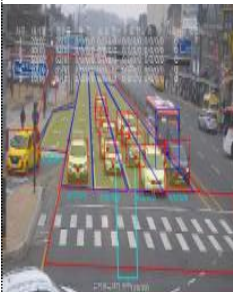
□ 정의

- 도로, 철도, 항공, 해운 등 교통수단과 관련한 인프라 및 정보통신기술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교통 안전성, 효율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체계

□ 주요기능

- 자동차·도로뿐 아니라 철도, 항공, 해상 등 다양한 교통수단과 교통시설 전반의 넓은 범위 내에서 교통 인프라·차량·통신·플랫폼이 융합된 정보기반 교통관리체계로, 실시간 교통정보의 수집·분석·제공을 통해 교통혼잡을 완화하고, 사고를 예방하며, 친환경 운행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함
- 특히, 자동차·도로 분야에서는 고속도로 및 일반국도에 차량검지기(VDS), 폐쇄회로카메라(CCTV), 도로전광표지판(VMS), 차종분류장치(DSRC) 등 다양한 ITS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, 수집된 정보는 ITS 교통관리정보센터에서 전국단위 실시간 교통정보로 연계·통합되어 제공되고 있음.
- 또한, 버스정보안내기(BIT)를 활용한 대중교통정보 제공, 하이패스(Hi-Pass)를 통한 전자지불서비스 등 다양한 ITS 서비스가 도입·운영되며, 국민의 교통 편의성 향상과 효율적 교통운영에 기여하고 있음

< 자동차·도로교통 분야 ITS 주요 서비스 >

				
<AI 신호제어>	<자동요금징수 (다차로하이패스)>	<버스정보안내 단말기(BIT)>	<수요대응버스>	<국가교통정보센터 모니터링>

□ 구축현황

- ① 고속국도 : 고속도로교통관리시스템(FTMS*), 터널교통관리시스템(TTMS**) 등 ITS 시설물 5,224km(44개 노선) 및 터널 594개소(29개 노선) 운영 중('24년)

*FTMS : Freeway Traffic Management System

**TTMS : Tunnel Traffic Management System

***고속도로 총 연장 : 5,224km('24년)

- ② 일반국도 : 일반국도 13,983km ITS 운영 중('24년)

- ③ 도시부도로 : 상대적으로 ITS 구축이 저조한 도시부 도로의 ITS 확대를 위해 지자체 ITS 구축 지원 중('09~)